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및 선거공고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거의 후보자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장



□ 노동이사 입후보자

기 호	부 서	직 급	성 명
1번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미성
2번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정훈

□ 노동이사 선거

- 선거 운동기간 : 2024.10.22.(화) ~ 10.29.(화) 24:00
- 선거일시 : 2024.10.30.(수) 08:00 ~ 18:00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작성일(10.3) 기준 재직 중인 직원 208명
- 선거방법 : 전자투표(그룹웨어사용)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
- 선출방법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거 공보

기 호	1	
부 서	경제사회연구실	
직 급	선임연구위원	
성 명	문미성	
근무기간	2002. 5. 15. ~ 현재	
경 력	< 주요 경력 > 2007.3 ~ 2008.7 경기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센터장 2013.1 ~ 2015.2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2019.1 ~ 2020.2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2020.2 ~ 현 재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출마의 변	- 경기연구원의 노동이사로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도모하겠음 - 현재 경기연구원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음 - 노동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동의 경영참여를 기함으로써 노동자의 복리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임 - 본인은 경기연구원 이사회에 단순히 1/n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경영진과 이사들에 대해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싸워나감으로써 노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임 -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권익에 어긋나는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복지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임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거 공보

기 호	2	
부 서	전략연구센터	
직 급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정훈	
근무기간	2012. 10. 1. ~ 현재	
경 력	< 주요 경력 > 2017.02 ~ 2018.12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2017.07 ~ 2018.12 경기연구원 노동조합 제1기 대의원 2020.02 ~ 2022.12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2023.01 ~ 2023.09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3.10 ~ 현 재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출마의 변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연구원 운영과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규정 변경, 사업계획, 경영방침 등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경기연구원 노동조합(규약 초안 작성, 대의원, 「정규직전환 TF」위원장), 부서장, 북부연구센터 근무, 도청 파견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운영 및 복지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의견이 연구원 경영에 반영되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동이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노동이사로 선임된다면, 아래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① 연구원의 정관 개정, 규정 제정·개폐, 사업계획, 예산 편성 등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사내 복지, 직무별 근로조건 등)에서 파악하고, 구성원들과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② 조직구성, 직제, 복무·승진·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내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③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고 노사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④ 예·결산, 감사, 각종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연구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제5장 선거운동

제10조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cm × 세로 60cm 이내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날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 경기연구원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